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 법령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개정 :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

다.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안 제6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마.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낙동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綠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④ 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허가 등을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 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광역시·시·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3.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5.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 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

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수질개선사업) ①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

시·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5조 각 호(같은 조 제3호·제11호·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6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低減)하기 위한 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3.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4.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지원
5.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6. 삭제 <2016. 1. 27.>
7.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8.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
9.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지원
10.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1.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2.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3.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5.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6. 그 밖에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동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관 실·과		환경안전과
입 안 자	과 장	문 경 원
	담 당	엄 승 진
	담 당 자	김 태 오 (480-5285)